

學院과외 내년 전면허용

교육부 立法예고 「속셈」서도 國英數지도 가능

고급소설립 강좌개설 자율화

7월공청회 9월개정안 확정

유치원생부터 초·중·고교생에 이르기까지 국어영역 수업을 일반교과목에 대한 학원과의 내년 전면 허용된다. 또 입정기준 이상의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학원설립 및 고습과목결정을 위한 자를 위해 지금까지 영어 수업을 가르칠 수 없었던 속셈, 주산 등 학원에서 이들과 과목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.

교육부는 5월 입정기준을 5월 1일부터 9월 개정안을 확정하고 12월 국회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.

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유치원생과 국민학생은 학원에서 예체능과목과 속셈, 운반, 컴퓨터 등 정규 교과목 이외의 과목만을 수강할 수 있었으나 법이 개정되면 국어 산수 등도 배울 수 있게 된다.

중고생의 경우 현재 중·고(9월 1일부터) 허용외 정(과) 강원 전담을 제외한 12개 시도에서 중·고생용 한 쪽만, 또는 양쪽 모두의 학기중 학원수강을 허용하고 있으나 새법이 시행되면 모든 시도에서 중·고생의 학기중 학원수강을 전면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.

이와 함께 현재 대학생과 외가 아닌 경우에는 직계 가족에게만 과외교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모·고모 등 3촌이내의 친족도 과외교습을 할 수 있게 된다.

단일과목에 한해 1인의 강사가 9명 이하의 학생을 가르치도록 되어있는 과외교습소에서도 영어 수학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.

前 청와대 민정비서관 金成翰씨에 3年구형

【울산】부산지검을 산지정